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변 호	

제출연월일 : 2024. 1. 8.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4. 03. 31.)

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 추진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4)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
- 5)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5조

다. 위탁사무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사례관리기능사업,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지역조직기능사업

라. 시설개요

- 1) 소 재 지 : 구미시 문장로 110(도량동)

2) 규모 및 주요시설

- 본 관 : 1,273m²(지상 3층)

(사무실, 연꽃어린이집, 푸드뱅크, 강당 등)

- 별 관 : 1,629m²(지하 1층, 지상 3층)

(푸드마켓, 노인복지센터, 도량마을돌봄터, 초록별장난감도서관 등)

- 나눔관 : 321m²(지상 2층)

(경로식당(120석 규모), 조리실 등)

마. 위탁기간 : 2024. 4. 1. ~ 2028. 12. 31.

바. 위탁조건

1)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 단체사무 처리 불가

2)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3)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와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아. 소요예산(산출근거) : 연간 796,640천원 정도(시비 100%)

자. 성과평가결과 : 탁월(97점)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상황 및 성과평가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 시설의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 있고, 주기적인 자체 점검 및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짐.

차.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적격(92점)

3. 부서의견

- 운영 기간 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우수(6회 연속 A등급)
-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재계약함이 적합하다고 판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복지증진 위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부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 사업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5년간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3,983,200천원으로
연평균 796,640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2차 연도부터 운영비 매년 인상을 2%로 반영함.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766,000	781,320	796,640	811,960	827,280	3,983,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766,000	781,320	796,640	811,960	827,280	3,983,2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766,000	781,320	796,640	811,960	827,280	3,983,2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김민정(☎480-512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 무 명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 탁 금			3,983,200천원(5년간)
위 탁 금 세 부 내 역			
기 간	항 목	계(천원)	산 출 내 역
2024년 기준	합 계	766,000	
	인건비	687,600	• 급여 및 제수당 등 : 687,600,000원 × 1개소
	운영비	51,340	•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 51,340,000원 × 1개소
	사업비	27,060	• 서비스제공기능사업 : 15,660,000원 × 1개소 = 15,660,000원 • 지역조직기능사업비 : 11,400,000원 × 1개소 = 11,400,000원

※ 매년 2% 인상률 기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위탁기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위탁기간 : 2019. 4. 1. ~ 2024. 3. 31.[5년간]
- 사 업 비 : 3,040백만원
- 평 가 자 : 2명(복지자원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 평가항목

부분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평가항목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	시설 및 환경	조직 운영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배점(100)	10	10	10	10	15	15	15	15
평점(97점)	10	10	10	10	14	13	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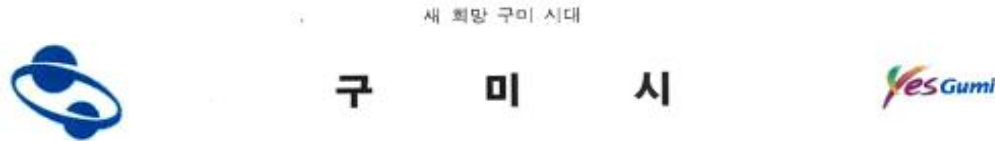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7점(100점 만점)
- 총 평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계획되어, 진행상황 및 성과평가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 시설의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자체 점검 및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짐.

심의결과 공문

(2023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 관련 공문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2023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회동의, 예산편성 등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95건) : 적정 95건
2. 아울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 홈페이지 내 공개개방-예산-재정-민간위탁제도 게시판에 게시

붙임 심의결과 1부. 끝.

구 미 시 장

관인생략

수신자 인구청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기업투자과장, 노동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과장, 낭만축제과장, 체육진흥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보육과장, 선산출장소장(행정민원과장), 선산출장소장(농업정책과장), 선산출장소장(유통특작과장), 선산출장소장(축산과장), 구미시구미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구미시평생학습원장(평생학습과장), 구미시평생학습원장(시립중앙도서관장)

주무관	허수범	인사팀장	김혜진	총무과장	전결 2023. 9. 27. 박노준
협조자					
시행	총무과-30122	(2023. 9. 27.)	접수	복지정책과-18390	(2023. 9. 27.)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송정동)	/ www.gumi.go.kr		
전화번호	054-480-6773	팩스번호	054-480-6759	/ hsb1210k@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GO!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잡GO!					

2023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 95건(적정 95건)

안건 번호	부 서 명	사 업 명	심의결과	비고
1	노동복지과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적정	
2	노동복지과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적정	
3	노동복지과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	적정	
4	일자리경제과	직업계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적정	
5	식량위생과	구미 푸드 페스티벌	적정	
6	복지정책과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적정	
7	농업정책과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적정	
8	인구청년과	구미시 웰컴센터 운영	적정	
9	인구청년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적정	
10	교육청소년과	초등학생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적정	
11	교육청소년과	초등학생 영어향상 프로그램	적정	
12	교육청소년과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적정	
13	기업투자과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	적정	
14	노동복지과	노사정 네트워크 협력사업	적정	
15	노동복지과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적정	
16	노동복지과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및 프로그램 운영	적정	
17	노동복지과	중소기업기술지원 및 마이스터고 진로적성교육사업	적정	
18	노동복지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적정	
19	일자리경제과	구미시 청년인재 스펙 잡고(JOB GO) 프로그램	적정	
20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	적정	
21	문화예술과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제	적정	
22	문화예술과	구미향토사료집 발간	적정	
23	문화예술과	도민체전 성공기원 시민 한마음 축제	적정	
24	문화예술과	구미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적정	
25	문화예술과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적정	
26	문화예술과	구미아시아연극제	적정	
27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적정	
28	낭만축제과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	적정	
29	낭만축제과	구미관광블로그 운영	적정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 2023. 11. 22.(수) 14:00
- 장 소 : 별관1 노동조합 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9명
- 심의대상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정상율/묘장)
- 심의내용 : 심의 배점표에 따른 재계약 여부 심의
- 심의방법 : 심의기준에 의한 평가 및 사업실적을 고려 재계약 여부 심의
 - 심의기준 : 3개 분야, 21개 항
 - 채점방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 합산·평균
 - 결정방법 : 평가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수탁 결정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사점수 92점으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재계약함.

심의안건	심사위원별 점수									심사 점수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1	2	3	4	5	6	7	8	9	
금오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재계약 심의	84	86	90	94	95	92	93	92	96	<u>92</u>

※ 적격기준 : 합산 평균 점수(최고·최저 제외) 70점 이상 시 재계약 협약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⑤시장은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진대지

□ 위치도



□ 현장전경



본 관



별 관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강 명 천
	팀 장	이 현 숙
	담 당 자	김 민 정 (480-5122)